

#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129 |
|------|-----|

2022. 09. 23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】
  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9.23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정수용 기획조정실장)

#### 1. 제안이유

-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체계를 정비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함(안 제4조 제2항)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맞춰 위원회 위원 수당의 종류, 지급기준, 지급제외 대상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됨.

#### 나. 위원회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

-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,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라 심의회 ·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· 운영하고 있음.

- 2021년 기준 23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위원은 총 5,303명으로 위촉직은 4,566명(86.1%), 내부위원(당연·임명직)<sup>1)</sup>은 737명(13.9%)임.

< 위원회 구성 현황 >

(단위 : 명)

| 합계    | 위촉직   | 당연직 | 임명직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5,303 | 4,566 | 556 | 181 |

- 위원은 전문가, 학계, 일반시민, 시민사회단체, 공공기관, 시의원, 민간기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, 이중 여성 위원은 1,915명(41.9%), 장애인 73명(1.6%), 청년 242명(5.5%)임.

< 위원회 위촉 현황 >

(단위 : 명, %)

| 합계    | 전문가             | 학계              | 시민<br>사회<br>단체 | 공공<br>기관     | 시의원          | 민간<br>기업     | 시민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4,566 | 1,586<br>(34.8) | 1,214<br>(26.6) | 348<br>(7.6)   | 327<br>(7.2) | 280<br>(6.1) | 271<br>(5.9) | 540<br>(11.8) |

- 2021년도 위원회 예산은 33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, 위원수당(참석·심사수당) 25억 3천 5백만원(76.5%), 실비(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) 1억 7천 9백만원(5.4%), 위원회 관련 사업 경비(토론회·포럼·워크숍 개최)와 회의 운영 6억 3백만원(18.1%)임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」 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,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.

-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본료(일당 15만원)와 초과수당(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)을 지급함.

<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| 연도   | 총액    | 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|      |          | 회의 운영 비용 |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    |       | 참석수당         | 심사수당 | 교통비 등 실비 | 사업경비     | 기타  |
| 2019 | 3,306 | 1,593        | 821  | 19       | 468      | 405 |
| 2020 | 3,167 | 1,496        | 897  | 15       | 575      | 183 |
| 2021 | 3,317 | 1,740        | 795  | 179      | 472      | 131 |

#### 다. 개정안의 세부 내용

##### (1) 수당 지급 체계 근거 명확화(안 제4조제1항)

-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‘참석 수당’과 ‘심사수당’ 등으로 구분하고,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.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u>제4조(수당)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</u> | <u>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|

|  |   |
|--|---|
| <p><u>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<u>1.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</u></p> <p><u>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</u></p> | <p><u>1. 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·의결·협의·자문 등(이하 “심의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u></p> <p><u>2. 심사수당 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</u></p> |
|--|---|

- 현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,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이하 ‘지방예산 편성기준’)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.

### 【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】

#### ❖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

| 편성 목      | 설 정 (통 계 목 포 함 )  | 비고 |
|-----------|---|----|
| 201 일반운영비 | <p>3. 운영수당</p> <p>가. 위원회 참석수당</p> <p>1) 법령,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</p> <p>2) 법령,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</p> <p>3) 교통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</p> <p>나. 심사수당</p> <p>- 법령·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<br/>예) 지방세이의신청심의, 투자심사 등</p> <p>-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|    |

- 개정안은 ‘지방예산 편성기준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체계를 정비함.

## (2) 수당 지급대상 제외(안 제4조제2항)

- 안 제4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새로운 항으로 신설함.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<u>제4조(수당)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4조(수당)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<u>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까지 포함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</u></p> <p><u>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|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([별표3])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공무원과 시의원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지급대상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.

#### 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】

- **공무원 지급제외** :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- **시의원 지급제외** :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·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- 개정안은 하위법령 체계에 맞춰 개정사항을 정비하고, 공무원과 시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 제외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는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음.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 V. 수정안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.

## 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시의원에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).

## VI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## 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관련 129 |
|------------|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2년 09월 23일  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.

#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의원에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).

# **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**

## **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| 수정안  |
|--|--|--|
| <p>제4조(수당) ② 수당의 종류<br/> <u>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</u><br/> <u>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</u><br/> <u>로 정한다.</u></p> | <p>제4조(수당) ② 다른 법령에<br/> <u>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</u><br/> <u>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</u><br/> <u>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</u><br/> <u>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</u><br/> <u>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<br/> <u>직접 담당하는 사무와</u><br/> <u>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</u><br/> <u>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</u><br/> <u>건 검토·심의한 경우.</u><br/> <u>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</u><br/> <u>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</u><br/> <u>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</u><br/> <u>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</u><br/> <u>까지 포함</u></p> <p>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<br/> <u>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이</u><br/> <u>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</u><br/> <u>회에 참석하거나 사전</u><br/> <u>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</u><br/> <u>한 경우</u></p> | <p>제4조(수당)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,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<br/> <u>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이</u><br/> <u>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</u><br/> <u>회에 참석하거나 사전</u><br/> <u>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</u><br/> <u>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</u><br/> <u>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</u><br/> <u>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</u><br/> <u>에서 지급한다.</u></p> |

##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 · 의결 · 협의 · 자문 등(이하 “심의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  2. 심사수당 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  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
-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 · 안건 검토 · 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 · 안건

검토 · 심의한 경우까지 포함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 · 안건 검토 · 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 한다.

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4조(수당)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</p> <p>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</p> <p>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·의결·협의·자문 등(이하 “심의 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p> <p>2. 심사수당 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p> <p>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</p> <p>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</p> |

한 경우까지 포함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